

1. 거주자 갑은 2023년 4월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.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시오.

(2018년 CPA)

(1) 상속재산의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다.

구 분	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
주 택	₩2,000,000,000

* 상속재산 중 주택에 대하여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.

(2) 갑의 동거가족은 다음과 같다(배우자는 없음).

대 상	연 령	비 고
모 친	70세	기대여명 20년, 장애인임
장 남	21세	
장 녀	9세	

(3) 갑의 장례비용은 확인되지 않는다.

(4)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.

(1) 상속세과세가액 : ₩2,000,000,000 - ₩5,000,000(장례비용*) = ₩1,995,000,000

* 장례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소공제액인 ₩5,000,000을 적용한다.

(2) 기초공제·기타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: Max[①+②, ③] = ₩650,000,000

① 기초공제 : ₩200,000,000

② 기타인적공제

자녀공제 : 2인×5,000만원 = ₩100,000,000

연로자공제 : 1인×5,000만원 = 50,000,000

미성년자공제 : 10년×1,000만원 = 100,000,000

장애인공제 : 20년×1,000만원 = 200,000,000

합 계 ₩450,000,000

③ 일괄공제 : ₩500,000,000

(3) 동거주택상속공제 : Min[①, ②] = ₩600,000,000

① ₩2,000,000,000×100% = ₩2,000,000,000

② ₩600,000,000

(4) 상속공제액 : Min[①, ②] = ₩1,250,000,000

① 상속공제합계액 : ₩650,000,000 + ₩600,000,000 = ₩1,250,000,000

② 상속공제한도액 : ₩1,995,000,000

(5) 상속세과세표준 : ₩1,995,000,000 - ₩1,250,000,000 = ₩745,000,000

2. 거주자 갑(2023년 5월 2일 사망)의 상속세 관련 자료이다.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은?

(2021년 CPA)

(1) 상속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.

구 분	회사채*	아파트**
갑의 취득가액	₩1,000,000,000	₩2,500,000,000

*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채이며,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다.

**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며 취득가액과 시가가 동일하다.

- (2) 상속재산 중 회사채의 상속개시일 이전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은 ₩1,300,000,000이며, 상속개시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은 ₩1,200,000,000이다.
- (3) 장례비용으로 봉안시설사용료 ₩9,000,000과 기타 장례비용 ₩4,000,000이 지급되었다. 봉안시설사용료는 적법한 증빙에 의해 확인되나 기타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다.
- (4) 갑의 동거가족으로 배우자(60세), 아들(40세), 아들의 배우자(42세)가 있으며, 배우자상속재산분할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.

(1) 총상속재산가액		
① 회사채	₩1,300,000,000 ^{*1}	
② 아파트	2,500,000,000	₩3,800,000,000
(2) 과세가액공제액		(10,000,000) ^{*2}
(3) 상속세과세가액		₩3,790,000,000
(4) 상속공제		
① 일괄공제	₩500,000,000 ^{*3}	
② 배우자상속공제	500,000,000 ^{*4}	
③ 금융재산상속공제	200,000,000 ^{*5}	
④ 동거주택상속공제	600,000,000 ^{*5}	(1,800,000,000) ^{*6}
(5) 과세표준		₩1,990,000,000

* 1. 회사채 : $\text{Max}[\text{₩}1,300,000,000, \text{₩}1,200,000,000] = \text{₩}1,300,000,000$

상장된 회사채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.

2. 장례비용 : ①+②=₩10,000,000

① 장례비용(봉안시설 사용액 제외) : ₩4,000,000 → 최소 ₩5,000,000

② 봉안시설 사용액 : ₩9,000,000 → 한도액 : ₩5,000,000

3. 기타인적공제와 기초공제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이므로 일괄공제를 적용한다.

4. 배우자상속공제의 최저한인 ₩500,000,000을 적용한다.

5. 금융재산상속공제 : $\text{Min}[\text{①}, \text{②}] = \text{₩}200,000,000$

① $\text{₩}1,300,000,000 \times 20\% = \text{₩}260,000,000$

② 최대금액 ₩200,000,000

5. 동거주택상속공제 : $\text{Min}[\text{₩}2,500,000,000 \times 100\%, \text{₩}600,000,000] = \text{₩}600,000,000$

6. 상속공제 종합한도 : ₩3,790,000,000